

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주요 개정내용

1. 목 적

- 고객 서명(날인) 횟수 축소를 통한 서식간소화 및 고객 편의 도모
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(2015.12.15) 내용 계약서 반영

2. 주요개정

가. 퇴직연금 계약서 고객 서명(날인)란 축소

제도명	계약서	변경전	변경후
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	운용관리계약서	운용관리계약서, 부속협정서 교육위탁계약서 각 1회 총 3회 서명날인	부속협정서, 교육위탁 계약서 2회로 축소
	자산관리계약서	자산관리신탁계약서, 부속협정서 각 2회 총 4회 서명날인 (신탁관리인포함)	부속협정서 2회로 서명날인 축소
개인형퇴직연금 (기업형)	운용관리계약서	운용관리계약서, 부속협정서 각 1회 총 2회 서명날인	부속협정서 1회로 서명날인란 축소
개인형퇴직연금	자산관리계약서	자산관리계약서, 부속협정서 각 1회 총 2회 서명날인	부속협정서 1회로 서명날인 축소

나. 사용자(가입자), 신탁관리인 요청시 고객용 계약서 작성 생략(사본교부)

다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(담보제공사유, 중도인출사유추가)

- 무주택자인 가입자 전세자금 및 보증금
-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, 혼례비, 장례비

3. 시 행 일 : 2016년 3월 28일